

생명보험 정산거래 현황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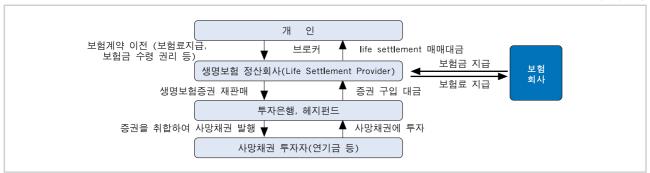
李 碩 晧 (研究委員, 3705-6391)

최근 들어 미국,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인생명보험 계약을 매매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 행하는 생명보험 정산거래가 급성장하고 있음.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나 공·사적 연금 시스템이 미 흡한 우리나라도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는 생명보험 정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.

- 최근 들어 미국, 캐나다.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인생명보험 계약을 매매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생명보험 정산(life settlement) 거래가 급성장하고 있음.
 - 먼저 생명보험 정산회사(Life Settlement Provider)는 브로커를 통해 생명보험계약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보험해약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개인으로부터 생 명보험증권을 매입한 후 잔여 보험계약 기간 동안 해당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계속 납 입해 주고, 그 대가로 피보험자 사망 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.
 - 이후 생명보험 정산회사는 매입한 보험증권을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등에 재판매하 고, 투자은행 등은 이러한 보험증권을 모아 사망채권(death bond)을 발행하여, 주로 연기금 등의 투자자들에게 매각함.
 -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통칭하는 생명보험정산거래는 1990년대 후반 처음 도입된 이후 거래규모가 연 평균 70%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2006년 말 현재 약 61억 달 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, 수년 내에 1,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〈그림〉 생명보험 정산 거래 흐름도

(단위:%)



자료: BusinessWeek, 2007. 7. 30, Nomura Research Institute, "금융 IT 포커스", 2008. 1



금융 포커스

- 개인이 제3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생명보험증권을 매도하는 주된 이유는 높은 환급금 수령, 고령화 사회 급진전, 저금리 지속 등을 들 수 있음.
 - 가장 직접적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중도에 보험계약의 해약을 원할 경우, 보험사를 통해 직접 계약을 청산하는 경우보다 생명보험 정산 회사를 통할 경우 환급금을 보다 많이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임.
 - 또한 최근 들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기대수명이 점차 연장됨에 따라, 적잖은 보험료를 계속 부담하기보다는 노후생활을 위한 목돈 마련, 의료비조달 등 경제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생명보험 계약을 매각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음.
 - 특히 자신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보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자의 경우, 유통시장을 활용하여 유리한 가격으로 보험계약을 정리하고 보다 좋은 조건의 대체, 투자처를 모색할 유인이 높아짐.
 - 이 밖에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래에 수령할 보험금의 현재가치가 하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주요한 동기 중의 하나임.
- 한편 투자자 측면에서 생명보험 정산거래에 참여하는 이유는 기존의 투자대상과는 다른 새로 운 고수익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임.
 - 일반적으로 사망채권의 경우 연 평균 수익률이 8~15%에 달하면서 주식, 채권 등 기존 투자자산과의 상관성은 거의 없는 반면, 장수리스크 등 거래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는 이미 정산 매매대금, 채권가격 등에 반영되어 있음.
 - 특히 장수리스크의 경우, 정산되는 생명보험증권의 풀(pool)이 확대될수록 그 위험도 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 - 이에 대해 Goldman Sachs 등 대형 투자은행들 및 미국증권가는, 사망채권이 대표적 차세대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-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나 공·사적 연금 시스템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는 생명보험 정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,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.
 - 우선 현행 국내법상 개인이 보유한 생명보험의 소유권 또는 보험금 수령권을 보험자 (보험사)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 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함.
 - 또한 생명보험 정산거래가 살인행위(homicides)를 유발하여 생명보험의 도덕적 위험 측면을 극단적으로 표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,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제도상의 보완장치와 함께 정산회사 및 브로커 등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·감독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.
 - 더불어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시행에 수반되는 높은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.
 - 한편 생명보험증권 보유자의 생전 노후생활자금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망보험 본래의 취지인 사망 시 보장자금 제공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일부 만 매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. KIF